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6
----------	-----

2019.06.24.(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9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6월 4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6월 13일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

가.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사업 중단 발표('17.4.10.) 및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17.9.29.)하고

○ 충주에코폴리스개발(주) 청산종료 등기완료('18.11.13.)와 행안부의 출자기관 지정해제 고시('19.1.31.)가 게재됨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3. 검토보고 요지(산업경제전문위원 : 오문석)

-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사업 중단 발표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충주에코폴리스개발(주) 청산종료 등기완료와 행안부의 출자기관 지정해제 고시가 게재됨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것임
- 다만, 조례 폐지에 따라 기존에 취득한 재산의 처분과 조직운용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
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2-17 조례 제 375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가 출자하여 충청북도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란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회사를 설립·운영할 경우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물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 사업

제4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충청북도(이하“도”라한다)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겸임) 도지사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5. 2. 17 조례 제3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